

동 물 의 학 명 (1)

백 종 철

(순천대학교 농생물학과)

Scientific Names of Animals(1)

Paik, Jong-Cheol

(Department of Agricultural Biology, Sunchon National University)

사람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을 필요에 따라서 구별하고, 그것에 이름을 붙였다. 이와 같이 자연물의 식별과 이름은 인간의 경제생활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분류학과는 거리가 먼 뉴기니아 산악 지방의 원주민들은 鳥類學者와 거의 비슷하게 極樂鳥의 種을 완전히 구분하고 이름을 붙였다(Mayr, 1969).

인류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자연물의 이용을 증가시켰으며, 또한 인간의 지식에 대한 끝없는 욕망은 모든 자연물의 記載를 목적으로 한 자연사(natural history)의 성립을 가져왔다. 동물의 경우, 그 존재가 알려진 모든 동물에 이름이 붙여지고 구분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의 학문으로 체계화된 것은 동물 분류학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넓게는 철학자이며 논리학을 통하여 후세의 학문 발달에 큰 공헌을 한 그리스 시대의 Aristotle(B. C. 384-322)였다. 그는 그때 까지 알려진 모든 동물을 기술하고, 그 형태, 발생, 습성 따위의 형질을 비교하여 약 520종의 동물의 분류 체계를 세웠다.

이후 대략 2000년에 걸친 중세기의 암흑시대에는, 여러 학문 분야가 그러하듯이 그리스 문화 계승에 머물렀으며, 16세기에 문예부흥을 맞이하면서 근대의 학문이 짹이 됬다. 분류학도 이 시기에 발전하였지만, Linnaeus가 확립한 이명법으로 분류학은 더욱 눈부신 도약을 하였다.

린네우스(Carolus Linnaeus = Carl von Linné,

1707-1778, 대개 린네라 부른다)는 1758년에 “자연의 체계, 제10판(*Systema Naturae*)”에서 그 동안 알려진 모든 동물을 二名法(binomial nomenclature)에 따라서 분류하였다며, 각각 중요한 특징을 기초로 Classis(綱), Ordo(目), Genus(屬), Species(種), Varietas(變種) 따위의 체계를 세워 명명된 종은 4,400이며, 이것이 동물 명명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때부터 동물학은 분류학이 주류가 되어서, 엄청난 수의 屬과 種이 命名 記載되고, 동시에 잇달아 분류 체계가 수립되면서 자연사에 대한 많은 업적이 이루어졌다.

1. 동물의 명칭

사람은 생물의 종류를 구별하고 각각에 이름을 붙여 왔다. 동물의 이름은 국가에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서 부르는 俗名(vernacular name)과 라틴어로 부르는 이름, 즉 學名(scientific name)이 있다. 분류학이 성립하고, 생물의 종류가 많이 인식되어 학문이 국제화함에 따라 동물의 공통된 명칭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이 린네가 창안한 2명식 명명법(二名式名命法)인 학명이다. 한편, 동물 도감이나 생물학 서적에서 표시한 〈청개구리〉, 〈소똥구리〉나 〈배추흰나비〉와 같은 '韓國名'은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표준어로서 학명이 아니라

통속명의 하나이며, 학명은 세계 공통의 명칭이다.

학명은 이전에는 이명법에서 種의 學名을 나타내지만 현재에는 科群의 명칭에도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군보다 상위분류군의 명칭도 포함하여 학명이라 한다. 학명은 세계 공통의 이름으로 식물, 동물, 세균, 바이러스는 각각 별도의 국제명명규약이 규정되어 있고, 각각의 규약은 그 목적이 같지만 내용은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명명규약의 목적은 하나의 분류단위에는 단 하나의 유효한 학명을 사용하며, 이 학명은 다른 분류단위의 학명과 명확히 달라서, 이런 학명을 사용해서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학명은 단지 동물의 명칭일 뿐이며, 동물분류학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집단을 대상으로 한 근대분류학과는 반대 입장이지만, 여러 저서나 논문에 학명이 사용되므로 학명을 바르게 쓰기 위하여 초보적인 해설을 한다. 그러나, 분류학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는 학명에 대한 더욱 상세한 지식을 알아야만 한다.

(1) 학명의 발달

현재 쓰고 있는 동물의 학명은 린네의 <자연의 체계, 제10판(1758)>을 출발점으로 한다. 屬名과 種名, 즉 2개의 단어를 열거한 이명식 명명법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구성원칙에는 약간의 변천이 있었다.

국제동물명명규약은 1958년 제15차 국제동물학회에서 채택되어 1961년에 제1판이 발간되었고, 1964년에 약간 수정하여 제2판이 출간되었다. 1985년에 발간한 제3판의 본문은 불란서어와 영어이다. 제2판은 한국동물학회지에 번역문이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판의 원문 참조가 필요하다.

1753년 린네는 <자연의 체계, 제1판(*Systema Naturae*, 1st ed.)>에서 모든 동물을 6강, 25목, 191속을 취급하면서, 각 군에는 한 단어로 된 라틴어(또는 희랍어로부터 유도된 단어)로 종을 표시하였다. 예를 들면, *Canis*속의 밑에는 *Canis*(개), *Lupus*(늑대), *Vulpes*(여우), 빈대는 *Cimex*속 밑에 *Lectularius*와 같이 표시하였다. 1748년 제6판은 6강, 30목, 241속을 다루면서 종의 설명을 더 자세

히 하였다. 즉 개는 *Canis*속의 밑에 *Canis cauda sinistrorum recurva* (꼬리가 왼쪽으로 구부러진 개)라고 종을 더욱 자세히 표현하였으며, 늑대는 *Canis cauda incurva* (꼬리가 구부러지지 않은 개), 여우는 *Canis cauda recta exterminate alba* (꼬리가 똑바르며 끝이 흰 개)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어떤 속은 한 단어로 간단한 표현을 많이 썼다. 예를 들면, 진딧물의 경우에는 속명인 *Aphis* 밑에 그 숙주식물의 이름을 붙여서 단 하나의 단어로 간결하게 종을 표시하였다. 예를 들면, *Aphis tiliae*, *betulae*, *pini*, *rosae*, *rumicis*, *artemisiae*, *brassicae* 따위 (江崎, 1965).

1758년 제10판은 6강, 34목, 312속을 다루면서, 모든 동물에 대한 종의 표시는 단 하나의 단어로 통일하였다. 즉 *Canis familiaris* (개), *Canis lupus*(늑대), *Canis vulpes*(여우) 따위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종명을 표시하는 한 단어의 이름인 *lupus*나 *vulpes*는 속명과 동격의 라틴어 명사이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familiaris*와 같이 속명을 한정 수식하는 형용사 또는 명사의 소유격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동물의 종류를 표현하는데 한 단어의 속명에 대하여, 여기에 1語의 속명을 한정하는 수식어 또는 동격의 명사를 추가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2명식명명법"으로, 현재 동물의 종을 나타내는 학명은 모두 이러한 형식을 쓰기 때문에 <*Systema Naturae*, 10th ed.>이 출간된 1758년 1월 1이 동물명명법의 출발점이 된다.

(2) 국제동물명명규약의 발달

이러한 이명법은 간결하고, 그 소속과 관계를 쉽게 알 수 있고, 명칭은 주로 라틴어 또는 라틴어로된 고대 희랍어로서 국제적으로 중립성이 크다는 장점으로 학계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동물분류학은 매우 빠르게 발달하였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도 매우 빠르게 늘어나서 그 명칭을 사용하는데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나타났다. 즉 同種異名(synonym)이나 異種同名(homonym)의 증가로 명칭의 사용에 혼란이 나타났다. 그래서 명칭을 같은 방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학자들의 요구에 따라 국제동물명명규약이 생겨났다.

동물학의 발전에 따라 동물 학명 사용에 혼란

을 방지하고자 Darwin과 같은 여러 학자가 1842년에 "Stricklandian Code"를 제정하였다. 이 규약은 1854년에 미국의 지질학회에서 공식 규약으로 채택하여 1863년에 출간하였으며, 1881년에 불란서의 동물학회는 국제규약을 제정하였다. 이 규약은 "Douvill Code"로 알려진 것을 국제동물학회에서 채택하여 사용하였으나, 1885년에 미국의 鳥類學會는 "Stricklandian Code"를, 독일 및 기타 국가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규약을 사용하였다 (Ferris, 1928).

이후, 1889년 불란서의 동물학자인 Raphael Blanchard가 제1회 국제동물학회(Paris)에서 처음으로 규약을 제출하였으며, 1892년 제2회(Moscow)에서 의제로 채택하였으며, 1895년 제3회(Leiden)에서 국제명명법위원회에 5인의 위원을 구성하여, 이전에 제출한 규약을 비교 검토하였다. 1898년 제4회(Cambridge)에서는 위원이 15명으로 증가하였고, 1901년 제5회(Berlin)에서 규약의 초안을 작성하여 1902년에 출간하였다. 이 규약은 1905년에 Blanchard, Maehrenthal, Styles가 수정을 하여 "Règles internationales de la Nomenclature zoologique (= International Rules of Zoological Nomenclature)"라는 제목으로 영어와 독일어 번역문과 함께 출간하였다. 1904년 제6회(Berne)에서 규약 위원회는 국제동물학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영속적인 기구가 되어서, 현재에도 명명규약의 연구나 수정 또는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관이 되었다.

이러한 기관의 노력에 따라서 제7회(1907, Boston), 제8회(1910, Graz), 제9회(1913, Monaco), 제10회(1927, Budapest)에서 규약의 내용은 차츰 개정하였지만 미비점은 많았다. 그래서 제11회(1930, Padua)에서 여러 의견들을 제출하였으며, 1938년에는 국제명명위원회가 강화하여서 1948년 제13회(Paris), 1953년 제14회(Copenhagen), 1958년 제15회(London)에서 규약은 크게 개정하여 1961년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adopted by the XV International Congress of Zoology, London, July 1958"로新版을 출간하였다(ICZN, 1964). 이 규약은 조문을 약간 수정하여 1964년에 제2판을 출간하고, 이후 조문은 다시 수정되어 1985년 2월에 출판한 제3판인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Third Edition adopted by the XX Assembly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Biological Sciences"에 따라 동물의 학명을 취급하며, 이 규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적용의 출발점 - 1758. 1. 1.
- (나) 적용범위 - 科群(Family-group)부터 種群(Species-group)으로 上科가 포함된다.
- (다) 학명의 單語數와 書體 - 1語 또는 2語(Uninomen, Binomen, Trinomen).
- (라) 저자인용 형식
- (마) 유효한 출판물의 기준
- (바) 학명의 적격성 기준 - 학명 또는 명명법상의 행위의 적격성(availabile).
- (사) 학명의 유효성(validity) - 선취권(principle of priority), 학명의 안정성(stability), 모식개념(type concept).
- (아) 부록 - 학명의 구성법과 회립어의 라틴어 치환 및 라틴어화 방법.

(3) 학명의 형식

학명은 1985년 간행된 국제동물명명규약 제3판에 상세히 규정돼 있으며, 모든 동물학자들은 이 규약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는 학문의 역사는 짧지만 생물학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종종 학명 또는 종이라는 기본사항을 이해하는데 소홀하거나, 그 뜻을 잘못 이해하여 학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가) 속(genus) 이상의 상위 분류군 - 과, 상과, 목, 아강, 강, 문과 같은 학명은 1名(uninomen)으로 라틴어 또는 회립어로서 複數主格名詞이다.

[예] Vertebrata, Mamalis, Aves, Insecta - 라틴어

Arthropoda, Gastropoda, Hymenoptera - 회립어

- (나) 과군(Family-group)의 어미 - 과는 어미가 "-idae", 아과는 "-inae", 상과는 "-oidea", 족(Tribe)은 "-ini"이며, 아족의 경우에는 자유이지만 통상 "-ina"를 붙인다.

(다) 속군(Genus-group) - 1名이며, 라틴어의 單數主格名詞이다. 회립어의 경우에는 라틴어로 만들어서 單數主格名詞로 취급한다.

- (라) 종군(Species-group) - 종 및 아종만 취급

하며, 동물학에서는 아종이하, 즉 변종, 생태종, 형따위는 쓰지 않고 속명과 함께 사용한다. 대개 종명은 “속명 + 종(소)명”을 말한다.

科群名의 명칭은 <규약>에 자세한 규정이 있어서 임으로 만들 수 없다. 과군명의 명칭은 어떠한 하나의 속을 기준속(또는 模式屬, type-genus)으로 정하여, 그 명칭의 屬格(所有格) 어간에 -idae라는 어미를 붙여서 사용한다. 대개는 기준속의 끝의 한개 또는 두개의 철자를 빼고 -idae를 붙여서 과군명을 만들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특히 희랍어에서 유래한 기준속은 과군명을 조합하는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규약>의 부록편에 있는 과군명의 구성표를 참조한다. 예를 들면, *Homo*가 기준속인 인류과는 Hominidae, *Apis*가 기준속인 꿀벌上科는 Apoidea, *Culex*가 기준속인 모기亞科는 Culicinae로 표기 한다. *Eulophus*가 기준속인 좀벌族은 어미의 철자 두개를 빼고 -ini를 붙여 Eulophini로 한다.

과군명보다 상위의 명칭에도 통속적인 학명이 있지만 업격한 뜻에서 <규약>이 말하는 학명은 아니지만, 명칭은 과군명과 같이 라틴어 또는 라틴어된 그리스어가 많이 쓰인다. 따라서, 절지동물로 갑각류인 게나 새우도 Decapoda, 연체동물인 오징어와 같은 두족류도 Decapoda이며, 또한 이들은 異種同名(homonym)이면서도 유효명이다.

(4) 학명의 구성법

식물(균류와 조류 포함), 동물(원생동물 포함), 세균의 학명은 국제식물명명규약, 국제동물명명규약 및 국제세균명명규약에 따라서 각자의 학명을 쓰며, 학명의 구성법이나 표기법은 각자의 명명규약에 따라 사용한다. 한편 바이러스에도 별도의 명명규약이 있지만 이명식 학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를 명명규약들은 서로 각각 독립하여 사용되며, 동물 학명의 구성과 적격성에 관한 사항은 규약 “제4장(적격의 기준, 제10-20조)”과 “제7장(학명의 구성과 처리, 제25-34조)”을 참고하기 바란다.

(가) 속명의 구성

현재의 동물명명규약에서 종명의 표시는 이명

식이므로, 속명을 알 수 없으면 종의 학명을 표시하거나 또는 생물의 정체를 표시할 수 없다. 한편, 속의 분류나 동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발표된 학명은 학문의 정보라는 의미를 상실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학계에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면, ‘*koreanus*’라고 하면 어떠한 생물인지를 구별할 수 없으며, 실제로 ‘*koreanus*’라는 종명은 수없이 많다. ‘*Apis mellifera*’라고 말하면 우리는 쉽게 ‘꿀벌’이라고 알 수 있으며, ‘*Musca domestica*’는 ‘집파리’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속명은 학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자신의 연구 대상인 생물의 속명을 정확히 아는 것은 생물학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와 같이 학문으로 중요한 속명은 동물명명규약에서 속명과 아속명은 同格으로 동일한 규칙과 권고에 따라 취급된다. 분류학에서 속과 아속은 동격은 아니지만, 규약에서는 동격이기 때문에 속명과 아속명을 屬群名이라 한다.

규약에서 “속명”은 그 어원과 구성법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다만 “라틴어의 主格 名詞”로 규정하고 있다(ICZN 제4장 11조 7항). 이 약속은 식물, 동물, 세균의 명명규약이 모두 동일하다. 이와 같이 속명은 라틴어 명사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 중성의 性(gender) 구별이 있으며, 명명규약에 이러한 규정이 있는 한 생물의 속명(아속명)에는 그들의 고유한 성이 있다고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않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물의 속명은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유스럽게 만든 단어이다. 그러나 속명의 작성법에는 몇 가지 제한된 범위가 있다. 국제동물명명규약(부록D, VI)에는 동물의 속명(아속명 포함)을 구성하는 단어의 형태로서 15개 조항이 있으며, 설명은 다음에 한다.

(나) 속명의 성

학명의 바탕은 속명이다. 명명법에서 속군명은 속명과 아속명 뿐이며, 과군명과 같이 계급별로 接尾語가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속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속군명의 성에 관한 문제이다. 종군명에 형용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합되는 속명의 성과 일치(agreement in gender)해야 하므로[ICZN Art. 31a 참조], 속명의 성을 바르게 알

아야 한다. 예를 들면, *Microgaster*의 성은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되었으나 신규약(1961년 판)에 어미가 “-gaster”인 속명은 여성으로 규정하여 혼란이 일어날 염려는 없다 [ICZN Art. 33a 참조].

한편, 새로운 속이나 아속을 창설할 때에는 동물명명규약 부록 E의 일반권고 제16항과 같이 그 어원과 성을 표시할 필요가 있으며, 규약 제30조는 속군명, 즉 속명과 아속명의 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해설은 다음으로 미룬다.

(a) 희랍어 또는 라틴어 단어의 성

희랍어 또는 라틴어 단어나 또는 후절이 이러한 단어로 끝나는 속군명은 희랍어 또는 라틴어의 표준사전에 표시된 성을 갖는다. 그러나, 명명규약 위원회가 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b) 접미사로 끝나는 명칭의 성

희랍어나 라틴어의 접미사로 끝나는 속군명이나 하나의 문자 또는 여러 개의 문자가 그와 같은 접미사와 동일한 속군명은 그 어미에 해당하는 성을 갖는다.

(c) 현대 인도-유럽어에서 유래된 명칭의 성

성별이 있는 현대 인도-유럽어의 명사를 정확하게 쓴 속군명은 그 명사의 성을 갖는다.

(d) 희랍어, 라틴어 또는 현대 인도-유럽어가 아닌 명칭의 성

희랍어, 라틴어 또는 현대 인도-유럽어가 아닌 단어에서 구성된 속군명은, 그것이 임의의 문자 조합이던 아니던, 그 명명자가 명시한 성을 갖거나 또는 결합된 종명에서 암시된 성을 갖는다. 만약에 성이 명시되지 않거나 암시가 없으면, 그 명칭은 남성으로 취급한다. 다만, 어미가 명확히 라틴어의 여성이나 중성인 경우에는 그 어미의 성을 갖는다.

(다) 種名의 구성

린네가 창안한 이명식명명법에 따라 종의 학명은 두개의 단어로 표시하며, 앞쪽은 屬名(generic name), 뒤쪽은 種名 또는 種(小)名 (specific name)이다. 하나의 종이 여러 亞種(subspecific name)으로 분할될 때에는 종명의 다음에 제3번쩨 단어인 아종(소)명을 덧붙여서 삼명식명명법(trinomial nomenclature)이 된다. 속이 여러 아속

으로 분할될 때에는 亞屬名(subgeneric name)을 속명과 종명의 사이에 괄호를 넣어서 삽입한다. 이때에 단어가 네개가 되어도 이명법 또는 삼명법이라 한다. 통상 학명을 표기할 때에는 종명 또는 아종명 뒤에 명명자의 이름을 덧붙인다. 속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명명자명을 괄호안에 넣어서 표기하며, 특히 명명된 시기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명명자명 뒤에 년도를 삽입한다. 속명과 아속명을 屬群名(genus-group name), 종(소)명과 아종(소)명을 種群名(species-group name)이라 하며, 각 군은 〈국제동물명명규약〉에서 先取權(priority), 異種同名(homonym), 同種異名(synonym) 따위에서 똑같은 자격을 가진다. 또한 학명은 라틴어 또는 라틴어로된 희랍어, 그 밖의 언어들은 라틴어로된 단어이다. 속군명은 주격단수명사, 또는 이와 같이 취급하는 단어로 제일 처음의 문자는 대문자로 쓰며, 하나의 속군명은 전동물중에서 하나만 유효하다.

종군명은 (1) 性이 속명과 일치하는 주격단수인 형용사, (2) 속명과 동격인 주격단수 명사, (3) 주격(소유격)명사로서, 라틴어 또는 희랍어 문법에 따라 사용하며 첫글자는 소문자로 쓴다(ICZN 제4장 11조 8항). 한편, 속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속의 성에 의하여 종명도 어미가 변화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규약에서는 고유명사에서 유래한 종군명을 대문자로 사용한 적이 있으나, 현재에는 모두 소문자로 한다.

학명의 표기는 반드시 이태릭체로 쓰며, 이태릭체가 없을 때에는 학명 밑에 밑줄을 그어서 표시한다. 새로운 학명의 제정법에는 많은 규칙이 있지만 특히 주의할 점은 종군명은 1자 이상으로 하고 발음기호나 기식부호 또는 불란서어와 독일어 같은 언어에서 액센트 기호, 복합어에서 아라비아 숫자는 전혀 쓰지 않는다. 그러나, 고전 라틴어에 없는 'j, k, w, y'와 같은 문자는 사용해도 된다.

학명의 표기법은 다음과 같이 여러 방법을 사용하며, 저자의 인용은 규약 제51조(Citation of name of author)를 참조하기 바란다.

(가) *Drosophila melanogaster*

(나) *Drosophila melanogaster Meigen*

(다) *Drosophila melanogaster Meigen, 1830*

(라) *Drosophila (Sophopora) melanogaster Meigen, 1830*

(마) *Pieris rapae* (Linnaeus, 1758)

(바) *Pieris napi japonica* Shirozu, 1952

(가)에서 *Drosophila*는 속명, *melangaster*는 종명(종소명), (나)에서 *Meigen*은 저자이름, (다)에서 1830은 종이 명명된 년도, (라)에서 *Sophopora*는 아속명, (마)에서 명명자 및 년도의 팔호는 속명의 조합이 당초와 변경된 것을 나타내며, (바)에서 *japonica*는 아종(소)명이다. (가)는 간략한 형식으로 잘 알려진 동물로서 논문이나 편집자의 요구가 없는 한 사용할 수 있으며, 欧美의 여러 교과서에서 이러한 형식을 쓴다. (나)는 가장 보편적인 형식이며, (다)와 (라)는 가장 상세한 형식으로 분류학에서 엄밀성이 요구될 때에 쓴다.

변종(variety), 型(form), 多型(morph), 品種(race), 돌연변이형(mutant), 계절형(seasonal form)과 같이 아종보다 下位의 형태가 구별되어 명명된 명칭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규약>에서 아종이하의 범주(catagory)는 학명의 자격이 없다. 다만, 1960년 이전에 변종이나 형으로 취급된 명칭은 종군명으로 적격하면 학명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식물에서는 아종 아래에 많은 분류군이 인정되어 명명된 학명이 많다. 그러나, 동물의 <규약>에는 동물의 학명 이외의 명칭은 어떠한 구속력도 없어서 학명과 같이 이태릭체로 본문과 구별하여 사용하더라도 종군명과 함께 조합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본래 학명은, 동물분류군의 명칭을 통일하여 바르게 사용하고, 더욱 간결한 표현을 위해 고안되었고, 또한 선취권의 원칙으로 학명이 자주 변경되면 본래의 뜻도 없어진다. 지금 잘 알려진 동물의 종군명이 훨씬 이전에 다른 명칭으로 명명되었으면, 이 명칭이 유효명으로 되며, 익숙하게 사용되던 명칭은 同種異名(synonym)으로 처리된다.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명명규약 국제심의회>는 어떠한 특정의 적격한 명칭에 대하여 조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는 기구로서 학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2. 국제동물명명규약 해설

19세기말 유럽의 동물학자들은 해마다 계속 종

가하는 동물의 학명을 그대로 방치하면 수습하지 못하는 혼란상태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여, 국제동물명명규약의 제정을 시도하여, 1905년에 처음으로 국제동물명명규약이 출간되었다. 이 규약은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얻어 50여년간 지속되었지만, 미비한 점이 많아서 1961년에 대폭 개정되어 신판이 출판되었다. 그후 다시 조문은 개정되어 현재 제3판(1985)에 따라 동물의 학명을 취급한다. 국제동물명명규약 제3판의 내용은 18장 88조의 조문과 권고 및 부록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of Contents

Preface to the Third Edition

Introduction

Basic dates in the Code

Explanatory Notes on the Code

The CODE

Preamble

- I. Zoological nomenclature: Article 1-3.
- II. The number of words in the scientific names of animals: Article 4-6.
- III. Criteria of publication: Article 7-9.
- IV. Criteria of availability: Article 10-20.
- V. Date of publication: Article 21-22.
- VI. Validity of name: Article 23-24.
- VII. Formation and treatment of names: Article 25-34.
- VIII. Family-group taxa and names: Article 35-41.
- IX. Genus-group taxa and names: Article 42-44.
- X. Species-group taxa and names: Article 45-49.
- XI. Authorship: Article 50-51.
- XII. Homonymy: Article 52-60.
- XIII. The type concept in nomenclature: Article 61.
- XIV. Types in the family group: Article 62-65.
- XV. Types in the genus group: Article 66-70.
- XVI. Types in the species group: Article 71-75.
- XVII.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Zoological Nomenclature: Article 76-82.
- XVIII. Regulations governing this Code: Article 83-88.

Appendices

- A. Code of Ethics.
- B. Transliteration and Latinization of Greek Words.
- C. Latinization of Geographical and Proper Names.
- D. Recommendations on the Formation of Names.
- E. General Recommendation.
- F. Constitution of the Commission.
- Glossary
- Index of Scientific names
- English Index

前文 要約

前文은 구규약(1905년판)에는 없다. 신규약(1961년 제1판)에 처음으로 보이며, 규약의 성립과 목적이나 임무 따위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규약의 핵심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규약은 국제동물학회(International Congress of Zoology)에서, 1973년 이후는 국제생물과학연합회 동물학부(Division of Zoology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Biological Sciences), 1982년 이후에는 동연합총회(General Assembly of that Union)에서 공인되어, 지구상에 출현한 동물 학명의 명명법에 관한 규칙(rule)과 권고(recommemdations)의 체계(system)이다.

규약의 목적은 학명의 안정성(stability)과 보편성(universality)의 촉진과 각 taxon(분류단위 또는 분류군)의 학명이 유일무이한 점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또한 모든 조항과 권고는 규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결코 연구자의 분류학에 대한 생각이나 행위의 자유(freedom of taxonomic thought and action), 즉 학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우기, 선취권(priority)은 규약의 기본원칙(basic principle)이다. 다만, 그 적용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학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조항의 완화도 가능하다. 또한 심의회는 학명의 안정성이 뚜렷하게 저해되는 사태가 일어날 때에는 규약에 관련된 조항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규약을 대하면, 모든 조항이나 권고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명명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 1 장 동물명명법 [제1조-3조]

(I. Zoological Nomenclature)

제1장은 동물명명법의 정의와 적용 범위나 출발점에 대한 3개 조항이며, 각 조항에 따라 관리하는 학명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제 1 조. 정의와 범위 (Article 1. Definition and scope)

전문에서 볼 수 있듯이, 동물의 명명법은 지구상에 출현하여 이미 絶滅하거나 또는 현존하는 동물의 분류단위 (taxonomic unit), 즉 taxon(복수 taxa)에 적용하는 학명의 체계(system)이다. 규약에서 취급하는 동물의 명칭은 절멸 또는 현존하는 동물에 명칭뿐만 아니라 화석이나 동물의 행위 (work of an animal), 즉 足跡化石(ichnotaxa)에 대한 명칭이거나, 1930년(before 1931)이전에 출판된 현존하는 동물의 행위(예: 충영, 고치, 서식장소)에 따른 동물의 학명 따위가 포함된다. 규약이 관리하는 학명은 과, 속, 종의 3군에 소속하는 taxa의 명칭에만 적용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명칭이 명명법에 적합하여도, 위의 3군 이외의 명칭은 규약의 조항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명칭은 선취권의 원칙이나 同種異名 (Synonym)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가공의 동물(예: 이무기, 용), 기형, 잡종, 과군보다 상위의 taxa, 아종 이하의 모든 型 따위의 명칭은 규약에서 제외된다. 한편 1931년 이후(after 1930)에 출판된 현존의 동물에서 기인한 학명이나, 규약이 관리하는 학명도 접두어나 접미어를 붙인 명칭은 제외된다.

또한, 동물명명법은 식물이나 세균명명법과는 서로 독립되있으며, 집합군(collective group)이나 족적화석(ichnotaxa)의 명칭은 명명법이 관여한 특수한 경우이다.

* collective group: An assemblage of nominal species that cannot be placed with certainty in known genera; names proposed expressly for

collective groups are treated as generic names [Art. 42b (i)] (ICZN, Glossary).

* ichnotaxa <(Gk) ichnos (track, trace) + taxa<taxis (oder, rank, arrangement).

* ichnotaxon, n.: A taxon based on the fossilized work of an animal, including fossilized trails, tracks and burrows (trace fossils), made by an animal. See also work of an animal (ICZN, Glossary).

* taxon (pl. taxa): Any taxonomic unit (e. g., a family, a subgenus, a species), whether named or not (ICZN, Glossary).

제 2 조 동물명명규약에서 특정한 명칭의 자격 (Article 2. Eligibility of certain names in zoological nomenclature)

처음에는 동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동물로 인정된 생물의 명칭은 규약에서 취급하며, 또한 적격명(available)이나 잠시 동안 동물로 취급한 명칭이 현재 동물계 이외에 존재할 때에는 동물명명법의 異種同名(Homonym)의 선취권에는 계속 참여할 수 있다.

제 3 조 개시점 (Article 3. Starting point)

규약은 1758년 1월 1일을 명명법의 개시점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다음의 2가지 업적을 명명법의 개시점으로 가정하고 있다.

(1) Linnaeus's *Systema Naturae*, 10th Edition: and

(2) Clerck's *Aranei Svecici*.

신규약 제 1, 2판에는 Linnaeus의 업적만 표시되어 있었지만, 제3판에는 옛부터 문제가 되어온 Clerck의 거미에 대한 업적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더우기 Clerck가 발표한 학명은 Linnaeus의 업적보다 상위의 위치에 있다. C. A. Clerck (1710-1765)는 1757년에 <스웨덴의 거미 (Aranei Svecici)>를 출판하였고, 이듬해인 1758년에 C. Linneaus (1707-1765)가 <자연의 체계, 제10판 (Systema Naturae, 10th ed.)>을 출판하였다. 1905년 이후, 동물명명규약에 따르면, 학명의 명명법이나 선취권의 출발점은 1758년이므로, Clerck의 학명은 거의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Clerck의 학명

은 이명법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記載와 그림이 있어서 Clerck의 학명은 유효하다는 논쟁이 있었다. 그리하여, 심의회에서 예외적인 조치로 Clerck의 출판년대를 1758로 취급하였으며, 1985년에 발행된 규약에는 조문으로 1758년 1월 1일을 Linnaeus와 Clerck 업적의 발행 년월일로 제정하였다.

제 2 장 동물의 학명의 단어의 수 [제 4 조 - 6조]

(II. The number of words in the scientific names of animals)

제1장은 규약이 관리하는 과·속·종의 3군에 소속한 분류단위(taxon)의 학명과 명명법의 정의나 적용범위 따위가 규정되었다. 제2장은 이들의 명칭을 구성하는 단어의 수에 관한 3개의 조항이다.

제 4 조 種群보다 上位階級의 taxon 명칭

(Article 4. Names of taxa of ranks above the species group)

種群보다 상위에 있는 학명은 1(單)語, 즉 一名式(uninominal)이며 항상 첫번째 철자는 대문자로 쓴다[예: *Arthropoda*, *Insecta*, *Hymenoptera*, *Apis*].

제 5 조 種群 계급의 taxon 명칭

(Article 5. Names of taxa of ranks in the species group)

종의 학명(species name: name of a species)은 2語, 즉 二連名(binomen)이며, 첫번째는 속명(generic name), 두번째는 종명(specific name)이다. 종명의 첫번째 철자는 소문자를 사용한다.

이러한 二名式命名法(binomial nomenclature)은 ‘이명식명명법의 원칙’ (Principle of Binomial Nomenclature)으로 규약의 기본 원칙의 하나이고, 아종의 학명은 속명, 종명, 아종명의 三連名(trinomen)이며, 아종명은 종명과 같이 첫번째 철자는 소문자를 사용한다[Art. 5b]. IV. Criteria of availability: Article 10-20.

科群이나 屬群의 학명은 一名式命名法(uninominal nomenclature)이기 때문에 별로 혼란될 염려는 없지만, 종군에서는 종이나 아종의 명칭을 이연명, 삼연명으로 표시할 때와 종명이나

아종명을 표시할 때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규약의 용어해설(glossary)과 함께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사용한다.

(1) 종의 이름 또는 종의 학명(species name; name of a species)은 종의 이연명을 말한다 (예: *Homo sapiens*).

(2) 종명 (specific name)은 종의 이연명의 두 번째 (단)어를 말한다. 일본어 서적에서는 흔히 종소명(specific trivial name) 또는 종형용어라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종명이라 하며, 종의 학명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3) 아종의 이름 또는 아종의 학명(subspecies name; name of a subspecies)은 속명, 종명, 아종명의 삼연명이다.

(4) 아종명(subspecific name)은 아종의 학명인 삼연명의 세번째 (단)어를 말하며 종명과 동일하게 표시한다.

제 6 조 插入名 (Article 6. Interpolated names)

제6조는 2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항은 이연명의 종의 학명 또는 삼연명의 아종의 학명에 아속명을 표시할 때 아속명을 괄호안에 넣어서 속명과 종명사이에 삽입하며(Art. 6a) [예: A-us (B-us) c-us d-us, B-us는 아속, d-us는 아종], (2)항은 종이나 아종의 集合群名(name for aggregates of species or subspecies)을 표시할 때 종의 집합군이면 집합군의 대표명을 괄호안에 넣어서 속명과 종명의 사이에 삽입한다. 한편 아종의 집합군명이면 종명과 아종명사이에 삽입한다. 이러한 집합군명의 삽입 조항은 규약의 제3판에 처음 등장하며, 아직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제3장 出版의 規準 [제7-9조]

(III. Criteria of publication)

제3장은 새로운 이름이나 명명법의 행위 따위를 출판할 때 필요한 사항과 출판의 규준에 관한 3개 조항이다.

제 7 조 적용 (Article 7. Application)

제7조는 새로운 학명의 출판뿐만 아니라 명명법의 행위(nomenclatural act)나 명명법에 영향을

주는 정보의 출판에도 적용되며[Art. 7], 또한 여러가지 정보를 널리 알리는 것도 저자 책임이기 때문에, 저자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전문 잡지 같은 출판물이 최고로 적합한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Rec. 7A].

제 8 조 출판물의 구성요소

(Article 8. What constitutes publication)

제8조에 만족하고 제9조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 업적을 출판의 본질에 따른 출판물로 인정한다. 이들 업적은 다음 규정에 만족해야 한다. (1) 과학에 대한 기록을 목적으로 정리한 업적은 公共的으로 출판하여야 하며, (2) 출판한 업적은 자유롭게 구입 또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어야 하며, (3) 업적은 똑같은 사본이 동시에 만들어야 한다[Art. 8a].

1985년 이전에 출판한 업적은 잉크로 인쇄한 보통인쇄(conventional printing), 즉 활판, 옴셋트, 등사판, 한천판 따위이다. 그러나, 1986년 이후에 출판한 업적은 보통인쇄 이외의 방법이라도 제8조 (i) - (iii)[Art. 8d (i) - (iii)]조항에 저촉하지 않는 한 적합하지만, 다만 등사판이나 한천판으로 인쇄한 업적이나 1986년 이후에 보통인쇄가 아닌 출판물은 피하라는 권고가 있다[Rec. 8A].

제 9 조 출판물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

(Article 9. What does not constitute publication)

출판물이 제8조의 모든 조항에 적합하더라도 다음의 조건에 저촉하면 출판의 본질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1931년 이후에 필사본의 인쇄나 특정 이외의 사진인쇄, 제록스와 같은 사진복사(1986년 이전의 출판은 제8조의 인쇄 규정을 만족한 것은 제외함), 마이크로 활률, 교정쇄, 녹음한 판 따위등 규정에 없었던 출판물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동료나 학생만으로 배포된 인쇄물, 표본에 붙은 라벨, 학회의 설명서, 출입논문과 같이 미발표한 인쇄물은 제외된다[Art. 9]. 그러므로 업적은 명명법에서 출판의 규준에 위반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비정규적 출판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구규약(1905년 판)에는 출판 규준에 대한 조항은 전혀 없으며, 신규약 초판(1961)에 처음으로

출판에 대한 조항이 보인다. 이전에는 출판한 업적이 출판규준을 만족하는지 아닌지의 결정은 쉬웠으나, 최근 인쇄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현재는 출판규준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보통인쇄 이외의 출판물(예를 들면, 제록스에 의한 전자복사인쇄)도 조건에 따라서는 적격한 출판물로 인정하게 되었다.

제 4 장 適格의 規準 [제10 -20조]

(IV. Criteria of availability)

출판된 새로운 이름이 모두 적격명(available name)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만약 학명이 특정한 조항에 만족하지 않으면 명명법에 따른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조항에 저촉하면 그 학명은 선취권의 자격이나 同種異名(Synonym)의 대상도 아니며, 유효명(valid name)으로 채택할 수 없다. 제4장은 학명의 적격 규준에 대한 20개 조항으로 명명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제10조. 일반조항 (Article 10. General provisions)

학명이나 명명법에 따른 행위는 제11조의 모든 조항[Art. 11 a-i]과 제10, 12-20조에 관련된 조항을 만족해야 비로서 적격하다[Art. 10a]. 또한 이 조항에는 특정한 이름에 대한 적격성을 규정하는 6개 조항[Art. 10b-g]이 있지만 생략한다.

제11조. 필요조건 (Article 11. Requirements)

학명이나 명명법에 따른 행위가 적격하기 위해서는 다음 9개 항에 만족해야 한다.

(1) 출판과 날짜(publication and date) - 적격한 명칭이나 행위는 제8조의 조항에 따라 1758년 이후에 출판한 학명이어야 한다.

(2) 언어(language) - 명칭은 라틴문자로 짓고 원저자가 학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언어는 라틴어나 라틴어로된 언어(word)이거나, 라틴어 이외의 언어 또는 단순한 문자를 조합한 것도 좋다. 신규약 제2판은 언어에 대한 조항(제2판 제11조b)이 미확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3판은 더욱 상세한 조문으로 개정하였고, 이전에는 라틴어 이외의 언어를 학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을 더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3) 二命式命名法의 適用(application of binominal nomenclature) - 학명은 이명식명명법의 원칙[Art. 5a]을 적용한다.

(4) 학명이 제출되면 유효명으로 처리할 것(names to be treated as valid when proposed) - 무효명인 명칭을 일부러 제출할 필요는 없다.

(5) 新參同種異名(junior synonym)인 출판(publication as a junior synonym) - 처음부터 신참동종이명으로 출판한 학명은 원칙에 따라 적격하지 않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이미 적격명으로 취급하였으면 적격명으로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며, 아래의 3개 조항은 과, 속, 종의 각군 학명의 적격에 관한 규정이 있다.

(6) 科群의 명칭(family-group names) - 科群名을 출판할 때에는 그 과군명에 포함된 屬, 즉 어떤 屬의 학명어간을 바탕으로 한 複數主格名詞이어야 한다. 한편 최초로 출판한 과군명의 접미어가 정확하지 않아도 적격명이 될 수 있지만, 다만 정정하여 사용한다 [예: *Tipulariae* Latreille, 1802는 *Tipula*를 바탕으로 구성된 과명으로 현재는 *Tipulidae* Latreille, (1802)로 사용된다].

(7) 屬群의 명칭(genus-group names) - 속군명은 單數主格名詞가 사용된다. 만약에 라틴어인 속군명이 단수주격이 아니라도, 다른 조건을 만족하면 적격으로 인정하지만 단수주격으로 정정하여 사용한다 [예: *Diptoxae* Loew, 1863은 *Diptoxa* Loew, 1863이 된다].

(8) 種群의 명칭(species-group names) - 종군명은 1자 이상의 단어 또는 복합어를 사용하며, 만약에 라틴어에서 유래된 언어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가) 속명과 성이 일치하는 단수주격 형용사나 분사인 것

(나) 속명과 동격의 단수주격의 명사인 것

(다) 소유격(속격)인 명사인 것

(라) 명명하는 동물에 관련된 생물의 종명에서 유래한 소유격의 실명사 (substantive)로 사용된 형용사인 것

(9) 오동정된 종명의 고의적인 사용(deliberate use of misidentification) - 새로운 속군명을 모식종으로 채택한 종명은 이전에 잘못 사용

했던 의미대로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새로 제안하는 이름과 같이 명명자와 명명날자는 모두 유효하다 [Art. 49, 70c 참조할 것].

[참고: Junior synonym은 한시적으로 新參同種異名, Senior synonym은 古參同種異名으로 부른다. 모두 일본한자이므로 좋은 우리말 용어를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1930년 이전에 출판된 명칭

(Article 12. Names published before 1931)

1930년 이전에 출판한 새로운 학명이 적격하기 위해서는 제11조를 만족하는 동시에 기재나 정의 또는 표시(indication)를 따르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Art. 12a]. 즉, 1930년 이전에 출판된 새로운 학명은 다음의 8개 조항의 어느 한쪽이라도 해당하면 적격명으로 취급한다.

(1) 이미 출판된 기재나 정의가 1758년 이전의 업적에 포함한 것으로 이명식이 아니거나 또는 그 문헌의 인용이 있는 명칭.

(2) 제11조c (iii)항의 이명식명법에 대한 조항을 만족하고 업적의 색인중에 포함된 명칭.

(3) 신치환명(new replacement name: nomen novum)인 명칭.

(4) 속명의 어간으로 구성한 과군명.

(5) 새로운 속군명은 적격한 종군명을 새로운 속군명과 결합하거나 새로운 속에 명확히 첨가하여 사용하며 또한 문헌의 인용에 따라 명확히 새로운 속군명으로 사용한 명칭.

(6) 새로운 속명과 종명을 동시에 기재나 정의할 때에는 양쪽의 명칭.

(7) 도판을 바탕으로 명명된 새로운 속군이나 종군의 명칭과 그 문헌의 인용에 따른 명칭.

(8) 절멸한 동물의 행위에 대한 기재의 명칭.

상기의 8개항에 어느쪽이라도 만족하면 1930년 이전에 출판된 새로운 명칭은 원기재나 정의를 따르지 않아도 적격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조항의 목적은 옛날에 출판되어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는 학명이 현행의 규정에서 보면 부적격하게 될 학명이 많이 발생하며,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유효명으로 사용한 학명의 폐기는 규약의 목적에도 어긋난다. 그래서 1930년 이전에 출판된 새로운 명칭에 적격성을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게 되었다. 위의 8개 조항에서 (1), (3), (6)을 제외한 나머지 5개항은 1931년 이후에 출판된 새로운 명칭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Art. 13e]. 또한 俗名, 產地, 寄主, 명찰, 표본 따위에 대한 記述은 기재, 정의, 지시를 구성하지 않는다.

제13조. 1931년 이후에 출판된 명칭

(Article 13. Names published after 1930)

제13조는 5개 조항이다.

(1) 1931년 이후에 출판한 새로운 학명이 적격하기 위해서는 제11조의 모든 조항을 만족하고, 특히 다음의 3개 필요조건인 어느 한쪽이라도 만족해야 한다[Art. 13a].

(가) 새로운 학명은 그 분류단위(taxon)가 다른 것과 구별하는 특징을 언급한 기재나 정의를 따라야 한다.

(나) 새로운 학명은 상기와 같은 구별점을 언급한 문헌의 인용을 따르고 있으면 적격하다.

(다) 새로운 학명이 신치환명(new combination)일 때에는 새로운 이름이라고 명확히 표시한다.

(2) 1931년 이후에 출판된 새로운 속군명은 위 (1)항의 조건을 만족함과 동시에 모식종(type specimen)을 지정한다.

(3) 새로운 속이나 종을 동시에 기재하거나 정의 할때 “n. g., n. sp.”나 혹은 그것과 같은 기호나 기타 기록이 있으면 모두 새로운 명칭으로 적격하다.

(4) 새로운 과군명이나 속군명이 연속한 기재나 정의는 모두 새로운 명칭으로 적격하다. 다만, 연속된 기재나 정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각각을 기재하든지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있다 [Rec. 13B].

(5) 1931년 이후에 출판된 새로운 이름은 앞 조에 표시된 조항[Art. 12b]의 2, 4, 5, 7, 8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 익명의 출판 (Article 14. Anonymous publication)

1951년 이후에 새로운 학명을 익명으로 출판하였으면 부적격하지만 1950년 이전에 출판한 것은

유효하다 [Art. 10a].

제15조. 조건부 제창 (Article 15. Conditional proposals)

조건부로서 1961년 이후에 제청한 학명은 적격하지 않지만, 1960년 이전에 출판한 것은 적격하다[Art. 51c (ii) 참조].

제16조. 용어 “variety” 또는 “form”을 첨가하여 제창된 명칭

(Article 16. Names proposed with the term “variety” or “form”)

상기의 제목과 같은 명칭으로 1961년 이후에 출판한 아종 이하의 명칭은 명명규약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1960년 이전에 출판한 명칭은 적격할 수도 있다.

제17조. 2개 이상의 분류단위(taxa)나 잡종으로 판명된 명칭이나 동물체 일부분에 따른 명칭 (Article 17. Names found to denote more than one taxon, or hybrids, or proposed for parts of animals)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격하다.

(1) 원기재에서 새로운 이름이 2개 이상의 분류단위(taxa)나 잡종, 또는 2개 이상의 동물체의 일부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도, 그 명칭의 적격성은 상실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신종의 기재가 2종의 표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도 적격성을 상실하지 않으며, 2종 중에서 1종의 명칭은 사용된다. 또한 신종이 잡종으로 나중에 판명되어도, 그 명칭은 적격성을 상실하지 않고 同種異名의 대상이 된다.

(2) 동물체의 일부나 또는 한쪽의 성, 생활사의 1단계, 세대교번하는 1세대, 또는 다형종의 1형에 대한 명칭은 적격이다.

제18조 부적합명 또는 반복명

(Article 18. Inappropriate and tautonymous names)

학명이 부적합하거나(inappropriateness) 또는 속명과 종명이 똑같은 반복명(tautonym)일지라고 적격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9조. 학명의 정정, 정확하지 않는 철자와 강제변경의 실태

(Article 19. Status of emendations, incorrect spellings, and mandatory changes)

정당하게 또는 부당하게 정정된 철자는 만약 다른 필요조건을 만족시키면 적격하지만, 정확하지 않는 원래의 철자나 바르지 않은 그후의 철자는 부적격하다. 또한 제34조에 따른 철자의 강제변경은 적격성과 관계가 없다.

제20조. 어미가 -ites, -ythes 또는 -ithes인 화석의 속군명

(Article 20. Genus-group names ending in -ites, -ythes, or -ithes, given to fossil)

위와 같은 어미를 가진 화석의 속군명으로만 적용하는 명칭은 同種異名의 원칙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선취권의 원칙이나 과군명의 구성에는 적격하지 않다.

인 용 문 현

김훈수, 이창언, 노분조. 1984. 동물분류학. 집현사, 502 pp.

백종철. 1995. 곤충의 학명 (1). - 한국곤충동호회지, 6(1): 3-10.

江崎悌三. 1932. 動物の學名の構成法. 44 pp. 國際書院.

平嶋義宏. 1987. 蝶の學名 - その語源と解説. 九州出版會. 269 pp.

平嶋義宏. 1989. 學名の話. 九州大學出版會. 380 pp.

佐佐治寛之. 1989. 動物分類學入門. 東京大學出版會. 124 pp.

内田清一郎. 1989. 鳥の學名. ニューサイエンス社. 122 pp.

Ferris, G. F., 1928. The Principles of Systematic Entomology. - Standford University Publications, Biological Sciences, 5(3):101-268.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adopted by the XV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Zoology. 1961. 1st ed., 176 pp.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adopted by the XV the International Congress

- of Zoology. 1964. 2nd ed., 176 pp.
-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adopted by the XX General Assembly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Biological Sciences. 1985. 3rd ed., 338 pp.
- Nybakken, O., 1959. Greek and Latin in Scientific Terminology. Ames, Iowa. 321 pp.
- Stearn, W. T., 1966. Botanical Latin. History, Grammer, Syntax, Terminology and Vocabulary. David & Charles, London. 566 pp.

附 記

원고 작성 이 끝난 다음에 Systematic Entomology(1995) 제 20권 4호, 375-377쪽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discussion draft of the proposed fourth edition, by O. K. Kraus & W. D. Ride"을 읽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 기사 내용에 "V. New provisions concerning the grammar and spelling of names"라는 소제목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a) Gender of generic names. - It is proposed that after 1996 generic names should be treated as words having no gender and therefore not affecting the spelling of adjectival specific epithets (e.g. albus, -a, -um) combined with them [Art. 30]. Consequent on this, the Editorial Committee offers two alternatives [see Arts 31b, 32c and 48] for discussion, as follow.

Either: (i) After 1996 the original ending of such an epithet is to be used in all combinations, whether or not the combination is new and whether or not a change in an existing binomen results.

Or: (ii) the ending of such an epithet is to remain as it is in an existing combination (so a binomen already in use for a species remains unchanged), but in new combinations first published after 1996 the original ending of the epithet is to be used.

앞으로 개정할 규약에는 속군명의 성에 대한

사항이 없어져서 학명 사용이 매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1997(after 1996)년 이후에 창설된 속군명에는 성이 없으므로 저자가 사용한 어미를 따라 쓴다. 따라서 새로 창설한 속군명이 신치환할 때에도 속군명의 성에 관계없이 원저자가 사용한 어미를 따르게 된다. 앞으로 동물명명규약이 어떻게 개정될지 매우 궁금하다.

동물 학명 어원 해설

현 명명규약에 과군명보다 상위 분류단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科群名에는 上科(Superfamily), 科(Family), 亞科(Subfamily)와 族(Tribe)이 있다. ICZN 제4장 적격의 규준(Criteria of availability) 제11조 f항의 科群名(Family-group names)의 명칭은 그 과군명에 속하는 어떤 속의 학명 어간을 바탕으로 한 "복수주격명사"이다. 한편 과군명보다 상위 분류군의 학명은 대부분이 복수주격명사이다. 예를 들면, Arthropoda(절지동물문)에서 후절의 poda는 회립어의 pous의 복수 주격이며, Insecta(곤충강)는 라틴어의 insectum의 복수 주격, Hymenoptera(벌목)의 후절 ptera는 회립어의 pteron의 복수 주격이고, Apidae(꿀벌과)의 어미 -idae는 동물의 과명어미로서 복수 주격형이다.

일반적으로 상위분류군인 과속명 이상의 분류군은 대부분이 복수 명사를 사용하는데, 회립어 어미가 "o-변화"의 -a로 끝나는 것은 복수 중성의 어미 형태인 -ta, -ata, -acea, -orea, -da, -ia, -ea, -a로 사용되며, 라틴어 제3변화의 -ia로 끝나는 것은 복수형은 -antia, -entia, -alia, -aria로 사용된다. 한편 어미가 -a-나 -o로 끝나는 남성과 여성 명사는 -i, -ii, -ini, -ei, -ae, -eae이며, 제3변화 명사는 복수형 어미가 -es, -ones, -ines, -(i)formes, -cipitis, -antes, -entes, -ides와 같이 된다. 예를 들면, Pisces(물고기綱)는 남성 복수형이며, Aves(새綱)은 Avis의 복수형, -formes의 형태는 형용사가 실명사로 사용한 복수형이다.

동물 학명의 종명은 라틴어에서 기원한 것이 대부분이며, 속명은 회립어에서 기원한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속명이나 상위 분류군의 학명은 대부분이 복합어로 구성되었으며, 회립어의 경우에 연결모음은 "-o"이고, 라틴어의 연결모음은 "-i"이지만 간혹 "-o-"를 사용할 경우도 있다.